

「제1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」 포상계획 공고

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과학기술 사업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「제1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」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

부 산 광 역 시 장

1 포상개요

- 명 칭 : 제1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
- 선정인원 : 총 2명 ▷ 대상 1, 최우수 1
- 훈 격 : 부산광역시 표창
 - ※ 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금 지급 ▷ 대상 30백만원 및 최우수 10백만원
- 발 표 : 부산광역시,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 ▷ 11월초
 - ※ 수상자 별도 개별통보
- 시 상 : 11. 13(금) 예정 ※ 변경 시 별도 통보

2 신청사항

구 분	주 요 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부산시 소재 기업 및 기관(대학, 연구소 등) 소속, 혁신기술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자- 소속기업·기관 (대학, 연구소 등)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 총 3인의 추천 필수- 관련 분야 현장 근무 경력 5년 이상 (이전 근무경력 합산)※ 공적 연한은 최근 3년 이내, 포상신청 제외대상자(첨부) 신청 불가
신청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'20. 9. 1 ~ '20. 9. 25 * 18시 도착분에 한함
신청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필 수- 작 성 : 신청서, 추천서(3), 업적증빙 목록표, 개인정보 동의서, 서약서- 첨 부 : 재직증명서,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※ 첨부의 업적 증빙 서류 제출 관련 목록 참조하여 개인별 업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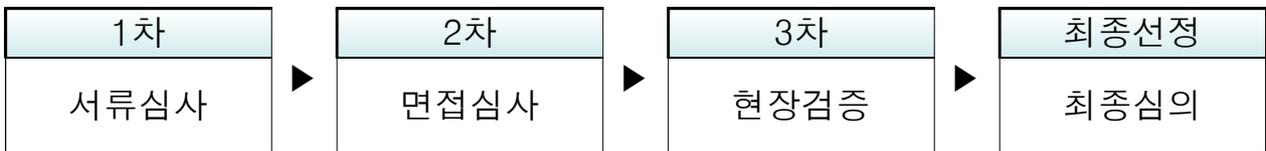
3 접수사항

구 분	주 요 내 용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서식 원본 및 한글파일 제출 - 원 본 : 우편 및 방문 접수 - 한글파일 : 전자메일 제출 (award@fobst.org)
접 수 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사)부산과학기술협의회 - (48735) 부산시 동구 범일로85, 8층 (삼미85빌딩)

※ 문의처 : 부산과학기술협의회 051-710-3124

4 평가사항

- 평가기준 :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도 등
- 평가절차



※ 부산광역시 포상조례, 시장포상 업무지침 근거 포상제외 대상자 및 심사결과 자격 미달 판명일 경우,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.

※업적증빙 자료 목록(참조)

업적증빙 자료	
1	내부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증빙자료 (최근 3개년)
2	R&D인력 현황자료(성명, 직급, 입사일, 근속연수, 학위, 자격증 등)
3	국내외 학회활동 증빙자료
4	타 기관 전문가 활용 증빙자료
5	기타 기술혁신 자원 증빙자료
6	특허정보 조사 및 산업재산권 관련자료
7	신기술인증 등 기술혁신 활동 증빙자료
8	비용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증빙자료
9	논문발표 증빙자료
10	대중매체 홍보 증빙자료
11	국내외 전시회 활동 증빙자료
12	대외 수상·인증 증빙자료
13	기타 기술혁신 성과 증빙자료
14	제품설명서 [별지 제2호] / 제품 카달로그 또는 사양서
15	산업재산권출원 및 등록증 사본
16	사내 또는 외부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
17	외부기관 또는 수요처의 품질인증서
18	판매개시일 입증 자료(세금계산서 등 매출 사실 확인자료)

❖ 신청(추천)제외 대상자

- 재 포상 금지 : 수여일로부터 신청일 기준
 -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
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 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-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대표자 등(고용노동부)
 -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신청(추천)을 제한함
 -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신청(추천)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신청(추천)을 제한함
 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,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❖ 신청(추천) 유의사항

- 신청(추천)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
- 신청(추천)기관은 신청(추천)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
- 포상신청(추천) 후 신청(추천)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·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신청(추천) 철회 가능